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나. 우주항공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직인

준수사항

1.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내 용	확인

비 영 리 법 인 설 립 허 가 대 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 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사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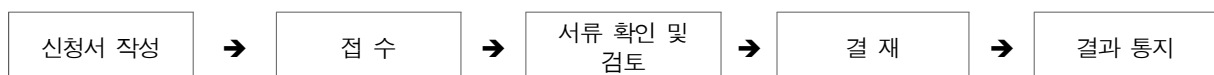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비 영 리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가 해산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확인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u> <u>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u> <u>관한 규칙</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u> <u>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u> <u>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에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u> 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 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 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 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 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u>과학기술정보통신</u> <u>부장관</u>(이하 “주무관청“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제1조(목적) -----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u> <u>관 또는 우주항공청장</u>----- ----- -----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 ----- ----- -----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 <u>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u>----- ----- ----- -----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략)

< 신설 >

-----.

1. ~ 6.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

	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